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기관	명 칭	전화번호	
	소재지		
	대표자 성명	법인등록번호	
	설립 근거		
	설립 목적		
	설립 연월일		

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· 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2.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1부 4.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. 사업자등록증 사본(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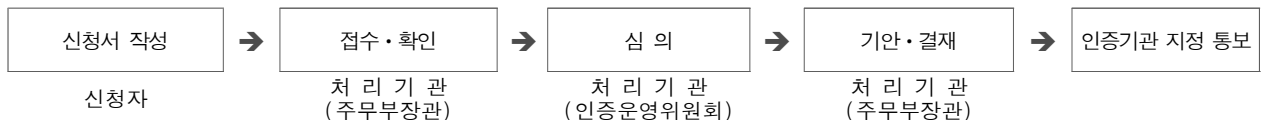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할 사항

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한다.

1.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2.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
4. 인증을 받은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
5.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